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적재량 측정자료 요청근거 마련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09호)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8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가. 박성훈의원안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09. 11.
3. 회 부 일 : 2024. 09. 12.

나. 김종양의원안

1. 제 안 자 : 김종양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09. 19.
3. 회 부 일 : 2024. 09.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성훈의원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물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적재중량: 적재중량의 110% 이내)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식별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로법」 제7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중량 등 위반 차량(적재중량: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운행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으나 경찰청은 적재중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및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 단속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청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차량이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재중량 안전기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7항 신설 및 제160조제3항).

나. 김종양의원안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재중량 초과(11할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과적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위반한 차량(총 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위반한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과적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상의 과적단속을 위해 측정한 검측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160조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이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박성훈의원안 제39조제7항 신설, 김종양의원안 제39조의2 신설), 적재중량이나 적재용량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차의 소유주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박성훈·김종양의원안 제160조제3항).

현행	박성훈의원안	김종양의원안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 ⑥ (생략) <u><신설></u>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에서 제1항에 따른 차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과 제6항에 따른 차의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에 대한 시·도경찰청장의 제한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에게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u>제39조의2(측정자료의 제공)</u> <u>① 시·도경찰청장은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u>
<u><신설></u>		

		<u>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이나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제공의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60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1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제1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	③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④ (생략)	----- ----- ----- ----- -----제39조제1항·제4항·제6항----- ----- ----- ----- ----- ----- -----영상기록매체 또는 차량의 적재량 측정자료----- -----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제39조제1항·제4항·제6항(적재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이나 제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 -----영상기록매체(제39조제1항·제6항의 경우에는 차의 적재중량을 검사·측정한 자료를 포함한다)----- ----- -----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

현재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의거하여 경찰과 도로관리청¹⁾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바, 단속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속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단속기준도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1) <도로법 상 도로관리청>

구 분	내 용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특별시광역시 등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일반국도 제외)와 지방도 중 각 관할 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시 관할 구역은 지방도 포함)는 해당 시장	해당 자치체장

※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

※ 경찰은 실무적으로 일반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 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함

「도로교통법」은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목적으로 주로 화물을 대상으로 폭·길이·높이 및 적재중량을 운행제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반하여, 「도로법」은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관리’를 목적으로 차량 자체를 대상으로 폭·길이·높이·총중량 및 축하중²⁾을 운행제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음.

<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 >

구분		도로법	도로교통법
입법목적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관리	교통의 안전과 소통
대상		차량	화물자동차
용량	폭(너비)	2.5m	후사경으로 후방 확인 가능한 범위
	길이	16.7m	자동차 길이의 110%
	높이	4.0m(또는 4.2m)	4.0m(또는 4.2m)
중량	중량	총중량 40t	<u>적재중량</u> 의 110%
	축하중	10t	-
단속주체		도로관리청	시·도경찰청장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관리청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에 위임)
과태료 금액		- 초과중량 5t 미만: 50~100만원 - 초과중량 5~15t: 80~160만원 - 초과중량 15t 초과: 150~300만원 - 적재용량 초과: 30~100만원	- 적재중량 4t 초과 화물차: 6만원 - 적재중량 4t 이하 화물차: 5만원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적재중량의 110%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적차량으로 단속되어야 하나, 「도로법」상

2) “**총중량**”이란 공차(空車) 중량에 최대 적재 중량을 합한 중량을 말하고, “**축하중**”이란 차량의 1차축에 작용하는 하중을 말함.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에 의한 단속은 가능하지만, 적재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부족과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해 현재 과적차량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사진 및 영상매체로 적재중량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영상매체를 통한 단속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적재량 측정자료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해당하지 않기에 적발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경찰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⁴⁾에 관한 안전기준이나 제한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3) 감사원은 2023년 경찰청·국토부·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대상으로 「화물차 안전운행 관리실태 점검」 결과, 화물차 적재중량 초과 관련 도로관리청의 측정자료를 과태료 부과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여 도로교통법 제39조 개정 필요성을 통보한 바 있음.

4) “**적재중량**”이란 자동차가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설계 중량으로 총중량·축하중으로 측정하고, “**적재용량**”이란 실제 적재 한계 내에서 적재할 수 있는 최대용량으로 폭·길이·높이로 측정함.

다만, 도로관리청은 적재용량에 대해서 도로법상 적재용량 위반으로 단속되어 적발된 자료만 보관하고 있으나, 「도로법」상 적재용량 기준과 「도로교통법」상 적재용량 기준이 달라, 도로관리청에서 보내는 계측자료를 통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적재용량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재용량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 예시>

측정장소 : ○○○	속도(Km) : ○○	총중량(t) : ○○	축중량(t) : ○○
------------	-------------	-------------	-------------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현행법상으로는 사진, 영상매체에 의해 ‘적재중량 위반’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는 사진, 영상매체에 포함되지 않기에, 적재중량 위반 사실을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동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측정자료의 제공대상에 시·도경찰청장 외에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등의 일부 자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4
